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

**충청북도의회**  
**정책복지위원회**

#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박형용 의원 등 7인

## 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0년 8월 26일
- 회부일자 : 2020년 8월 28일

## 3. 제안이유

-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함.

## 4. 주요내용

- 가.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, 기능 및 구성 (안 제2조, 제3조, 제4조)
- 나.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실적 보고 (안 제5조)
- 다.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에 대한 지도·감독 (안 제7조)
- 라.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(안 제9조)
- 마.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위탁 운영 (안 제10조)

## 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김주희)

### 가. 제출배경

- COVID-19 확산으로 지역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이 한층 증가되고 있으며,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음.

- 또한, 보건복지부는 ‘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(‘16~’20년)’ 을 통하여 공공보건의료정책 지원조직의 기능강화 차원에서 시·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확충 지원을 명시하고 있고,  
 ‘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(19.11)’ 에서도 시·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확대를 규정한 바 있음.
- 현재,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관련 조례를 13개 시·도에서 제정·시행 중에 있으며, 보건복지부는 국비 지원을 통해 '22년까지 17개 시·도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.
- 이에, 도민에게 양질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과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의료계획 수립·시행에 대한 지원, 공공보건의료기간 간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을 수행할 공공보건의료단을 설치를 위해 본 조례안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됨.

《 타 시·도 조례 운영현황 》

시·도	조례명	제·개정일
서울특별시	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2017. 1.15.
부산광역시	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2015. 9.23.
대구광역시	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2019. 1.31.
인천광역시	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에 관한 조례	2013.10. 2.
광주광역시	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	2014. 3. 1.
대전광역시	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조례	2019.10.18.
울산광역시	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2020. 5.28.
경기도	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2016. 9.29.
강원도	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2017. 9.29.
전라북도	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	2020. 7.13.
전라남도	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2019.10.17.
경상남도	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2019. 1.31.
제주도	제주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2017. 3.28.

**나. 주요 검토내용**

- 안 제2조는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근거를 명시함.
- 안 제3조는 지원단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, 주요기능은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계획 수립·시행에 대한 지원, 공공보건의료기간 간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, 의료인력 DB구축을

통한 의료 취약지 인력 지원,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종사자 교육·훈련, 공공의료기관 평가 지원 등임.

- 안 제4조는 지원단의 구성은 6명(단장 포함)이상의 연구원과 행정요원으로 하고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라 정하도록 규정함.
  - 지원단 연구원 및 행정요원의 자격, 역할, 모집방법 등과 운영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 또는 지침 등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5조는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는 사업계획 수립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는 사업추진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함.
- 안 제7조는 도지사가 지원단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소속 공무원 등을 통하여 확인·검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안 제9조는 지원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.
  - 지원단의 비용 지원 범위, 규모, 지원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 마련이 요구됨.
- 안 제10조는 도지사가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공의료에 대한 전문성은 갖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#### 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,  
  
보건복지부에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고, 13개 시·도에도 시행 중에 있음.
-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제공을 위해 공공의료지원단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,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있어 특별한 이견은 없음.